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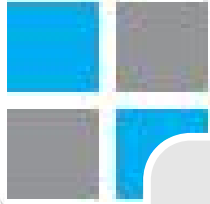
직무교육기관 평가지표

2018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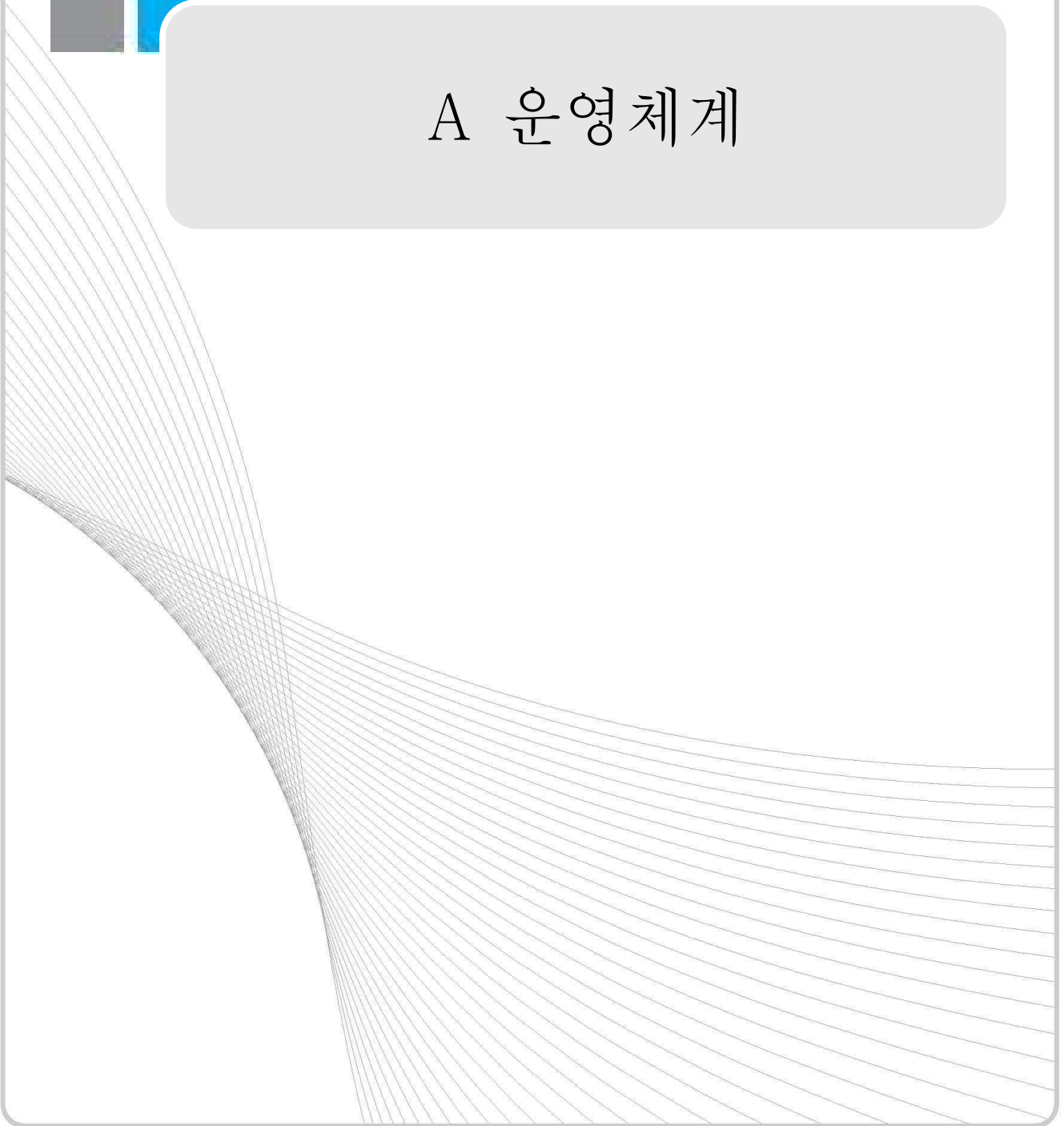
산안법 제32조

직무교육기관 평가지표

분야	평 가 항 목		평 가 지 표		배점
합 계					1,000
A 운영체계	소 계				400
	A.1	운영방침 및 업무관리체계	1.1	운영방침 및 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	40
			1.2	업무분장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	40
	A.2	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 (인적기준)	2.1	전문인력 추가 확보 및 정규직 채용 노력도	100(+20)
			2.2	직원 교육·훈련의 적정성	90
			2.3	교육장 안전관리 계획 및 비상시 대처 방법의 적정성	40
	A.3	시설·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 (물적기준)	3.1	시설·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	70
			3.2	휴게공간 등 교육생 편의시설의 적정성	20(+5)
	가 감 점 항 목	A4 포상 및 행정처분 사항	4.1	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또는 보유 인력 에 대한 포상 실적	+10
			4.2	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	-15~-80
			4.3	시정조치·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	-2~-20
B 업무성과	소 계				600
	B.1	교육관리	1.1	교육실시 활성화의 적정성	60
			1.2	VR체험교육 활성화 노력	50(+40)
			1.3	교육일정 변경절차 준수 및 변경일정 공지의 적정성	30
			1.4	커뮤니티 또는 홈페이지 운영의 적정성	40(-10)
			1.5	교재 및 교육내용의 적정성	60
			1.6	위탁교육과정 개수 및 충족 비율 (폐강율 포함)	60
	B.2	교육생 관리	2.1	교육생 출결관리의 적정성	60
			2.2	학급당 정원 및 교육생의 업종 동질성 여부	60
			2.3	교육수료자 결과등록의 적정성	20
	B.3	고객 만족도	3.1	교육이수자 만족도	100
	B.4	자체평가 및 개선 노력	4.1	교육프로그램 자체평가의 적정성	30
			4.2	자체평가에 의한 개선 실적의 적정성	30



A 운영체제



A.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체계

세부평가 A.1.1		운영방침 및 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(배점:40점)	
평가 지표	평가기준	평가결과	
운영방침 및 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	연간 교육계획 수립 시 아래 <표1> 필수 반영 사항 ①~⑤를 모두 반영한 경우	☐ 40	
	연간 교육계획 수립 시 아래 <표1> 필수 반영 사항 ①~⑤ 중 1건을 미반영한 경우	☐ 30	
	연간 교육계획 수립 시 아래 <표1> 필수 반영 사항 ①~⑤ 중 2건 이상을 미반영한 경우	☐ 10	
	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	☐ 0	
평가취지			
○ 합리적인 교육 수요 예측을 통한 연간 교육계획 수립 내용의 충실도 및 적극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운영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함			
주요평가내용			
○ 교육기관 본사 평가 시 지부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(이하 내용 동일) - 위탁교육을 위해 설치한 지부, 출장소 등이 있을 경우 지부 및 출장소 중의 20% 미만(소수점 이하 버림)을 임의로 선정(지부 및 출장소가 5개소 미만인 기관은 1개소 선정)하여 방문 평가하고 본사, 지부 및 출장소 각각의 평가 점수를 평균하여 최종 점수로 산정 - 지부 또는 출장소가 1개인 경우 2개소 방문(본사 1개소, 지부 또는 출장소 1개소) ○ 운영방침 및 교육계획의 수립여부는 연간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*되었는지 문서화**된 서류(이하 서류)를 확인하여 평가 * 매년 2월 이내 수립한 교육계획에 한함 ※ 연중 신규 등록기관 : 등록 후 1개월 이내 ** 내부결재를 득하여 일련번호(등록번호)와 등록일자를 부여한 문서만 인정(이하 “문서”란 동일한 의미로 사용)			
<표1> 필수 반영 사항 ① 교육과정명, 교육 대상(과정별 인원 포함) 및 목적 ② 연간 교육일정 : 월별 일정, 강사, 장소 및 시간 등 ③ 교육생 확보 방안(교육과정 홍보 방안 포함) ④ 교육내용 : 교육과정별 커리큘럼 및 교육 방법(강의식, 실습식 등) ⑤ 교육생 만족도 향상 방안			
현장확인사항			
○ 연간교육계획서, 업무매뉴얼 등			

세부평가 A.1.2		업무분장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(배점:40점)	
평가지표	평가기준	평가결과	
업무분장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	교육사업 업무관리체계에 따라 교육 기관 운영 시 아래 <표2> 미흡사항 ①~②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을 경우	□ 40	
	교육사업 업무관리체계에 따른 교육 기관 운영 시 아래 <표2> 미흡사항 ①~②에 해당하는 항목이 1건 있을 경우	□ 20	
	교육사업 업무관리체계에 따른 교육 기관 운영 시 아래 <표2> 미흡사항 ①~②에 해당하는 항목이 2건 있을 경우	□ 0	
평가취지			
○ 교육기관의 업무관리체계 따른 조직도 및 업무분장 등을 문서화하여 시행함으로써 교육 기관 운영의 시스템화를 유도하기 위함			
주요평가내용			
○ 교육기관 본사 평가 시 지부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			
○ 교육기관의 업무관리 체계는 교육기관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 문서와 현장 확인을 통해 평가			
※ 등록 기준상의 자격기준에 맞는 인력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 경우 0점 처리하고 고용노동부에 행정조치 의뢰			
<표2> 미흡사항 ① 조직도 및 업무분장 사항을 문서화 하지 않은 경우 ② 조직도상 인력이 실제 업무 분장 상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			
현장확인사항			
○ 조직도, 업무분장, 고용계약서 등			

A.2 인적자원 보유 및 관리(인적기준)

세부평가 A.2.1		전문인력 추가 확보 및 정규직 채용 노력도(배점:100점, 가점:20점)	
평가지표		평가기준	평가결과
		총 점	
전문인력 추가 확보 및 활용	■ 전문인력 추가 확보 및 활용(배 점:80점)		
	교육과목별 복수강사 확보여부(점수 상한 25점)		
	내부강사 강의비율(점수 상한 25점)		
	고급강사의 강의비율(점수 상한 30점)		
정규직 채용 노력도	■ 법적인력기준 등 정규직 채용 여부(배점:20점, 가점:20점)		
	법적 인력기준 정규직 전문강사 100% 채용		☐ 20
	법적 인력기준 정규직 전문강사 50%이상~100%미만 채용		☐ 10
	법적 인력기준 정규직 전문강사 50%미만 채용		☐ 0
	법적 인력기준 외 추가 정규직 전문강사 1명이상 채용 (가점:20점)		
평가취지		※ 교육기관 본사 평가 시 지부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	
○ 우수 교육강사 확보를 통한 교육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함			
주요평가내용			
○ 전문인력 추가 확보 여부는 각 과정별 강사현황에 대한 문서(조직도 및 업무분장 등) 및 자격증, 학위 취득증명서,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확인하여 평가			
※ 문서화 되어있지 않을 경우 불인정			
○ 교육과목별 복수강사 확보 여부는 강사가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 시 대체할 수 있는 강사 확보여부를 아래의 산식에 따라 점수 산정			
－ 복수강사 확보 비율 점수 : (점수 상한 25점)			
= 25점 × $\frac{\text{대체강사수(명)}}{\text{등록강사수} + \text{평가대상기간시간표상강사수} \times (\text{명})}$ × 1.5			
* 시간표상강사수 : 등록강사수를 제외한 연간시간표상 강사수			
※ 1명의 강사가 2개 과목을 담당할 경우 1명으로 인정			
○ 내부강사* 강의 비율은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내부강사의 강의 비율을 아래의 산식에 따라 평가			
－ 내부강사 강의 비율 점수 : (점수 상한 25점)			
= 25점 × $\frac{\text{내부강사 강의시간}}{\text{평가대상기간 총교육시간}}$ +0.5			
* (내부강사) : 해당 교육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강사로 산안법 시행령 별표6의5 강사자격에 해당하는 자			
○ 고급강사의 강의 비율은 교육의 품질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전체 교육시간 중에 고급강사의 강의 비율을 아래의 산식에 따라 점수 산정			
－ 고급강사의 강의 비율 점수 : (점수 상한 30점)			
= 30점 × $\frac{\text{고급강사강의시간}}{\text{평가대상기간 총교육시간}}$ +0.5			
* (고급강사) : 산안법 시행령 별표6의5 인력기준의 총괄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			
현장확인사항			
○ 고용계약서, 임금대장, 등록강사서류 등			

세부평가 A.2.2	직원 교육·훈련의 적정성(배점:90점)	
평가지표	평가기준	평가결과
총 점		
직원 교육·훈련의 적정성	☒ 교육기관 직원에 대한 연간 교육·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여부(배점:40점)	
	직원의 역량강화 활동 참여 비율(시간) 0.5 이상인 경우	☐ 40
	직원의 역량강화 활동 참여 비율(시간) 0.4 이상 ~ 0.5 미만인 경우	☐ 30
	직원의 역량강화 활동 참여 비율(시간) 0.3 이상 ~ 0.4 미만인 경우	☐ 20
	직원의 역량강화 활동 참여 비율(시간) 0.2 이상 ~ 0.3 미만인 경우	☐ 10
	직원의 역량강화 활동 참여 비율(시간) 0.2 미만인 경우	☐ 0
	☒ 내부강사의 강의능력 향상 노력 여부(배점:50점)	
	강사 강의능력 향상 활동 참여 비율(횟수)이 0.5 이상인 경우	☐ 50
	강사 강의능력 향상 활동 참여 비율(횟수)이 0.3 이상 ~ 0.5 미만인 경우	☐ 30
	강사 강의능력 향상 활동 참여 실적이 없는 경우	☐ 0
평가취지		
○ 교육기관의 직원(강사 및 과정운영 담당자)에 대한 교육·훈련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교육·훈련 이행을 유도하여 강사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		
주요평가내용		
○ 교육기관 본사 평가 시 지부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		
○ 교육기관 직원(내부강사 및 과정운영 담당자)에 대한 연간 교육·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여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평가		
- (직원역량강화활동) : 문서화된 연간 교육·훈련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행한 안전보건관련 교육 활동 참여비율(시간) : $\frac{\text{평가대상기간 직원별 역량강화활동총시간}}{\text{직원수} \times 16\text{시간}}$ * 직원수 : 내부강사 및 과정운영담당자		
○ 내부강사에 대한 강의능력 향상 노력 여부		
- (강사강의능력향상활동) : 문서화된 연간 교육·훈련계획 이외에 추가로 강의능력향상을 위해 관련분야 세미나, 학회 참석 등의 활동 참여비율(횟수) : $\frac{\text{평가대상기간 강사별 강의능력향상활동총횟수}}{\text{내부강사* 연인원}}$ * (내부강사) : 해당 교육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강사로 산안법 시행령 별표6의5 강사자격에 해당하는 자		
현장확인사항		
○ 교육·훈련 계획수립 문서, 강사 및 과정운영 담당자의 외부교육 이수증 등		

세부평가 A.2.3		교육장 안전관리 계획 및 비상시 대처방법의 적정성(배점40점)	
평가지표		평가기준	평가결과
총 점			
교육장 안전관리 계획 및 비상시 대처방법의 적정성	■ 교육생 안전관리계획 시행 여부(배점:20점)		
	교육장 안전관리계획이 문서화되어 있고 적정한 경우 (배점:10점)		
	교육생 대상 손해배상 보험 가입된 경우(배점:10점)		
	■ 교육장 안전시설 구비 여부(배점:20점)		
	비상 대피경로 교육장내 게시 및 교육생 대상 안내 여부(배점:8점)		
	교육장 내 소방설비 및 장비(소화기 등)가 갖추어져 있고 상시 사용이 가능한 경우(배점:4점)		
	전용구급함(응급조치 물품)이 구비되어 있고 상시 사용이 가능한 경우(배점:4점)		
평가취지			
○ 교육장 안전관리 계획 및 비상시 대처 방법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화재 발생 등 비상 사태 시 교육생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함			
주요평가내용			
○ 교육기관 본사 평가 시 지부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			
○ 교육장 안전관리 계획 및 비상시 대처방법의 적정성은 세부평가기준 점수(세부 평가 기준별 조건에 부합할 경우 각각의 점수를 부여, 아닐 경우 0점)를 합산하여 산정			
○ 교육생 안전관리계획 문서화 적정성은 평가기준에 따라 각각 평가하여 합산			
- (교육장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여부) : 안전시설 관리 및 유지계획, 비상 연락망 구축, 비상 대피경로게시, 비상시 대처방안 게시 및 안내, 응 급조치물품 구비 및 관리방안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구체적으로 작성된 경우			
- (교육생 손해배상 보험 가입여부) : 교육생에게 발생한 생명, 신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보험 가입여부			
○ 교육장 안전시설 구비 여부는 세부평가기준 점수(세부 평가기준별 조건에 부합할 경우 각각의 점수를 부여, 아닐 경우 0점)를 합산하여 산정			
현장확인사항			
○ 전용구급함, 응급조치 물품구비 확인, 보험가입서류, 교육장 안전점검일지 등			

A.3 시설·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(물적기준)

세부평가 A.3.1	시설·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(배점:70점)	
평가지표	평가기준	평가결과
총 점		
시설·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	■ 교육기관 등록기준 이상의 장비보유 여부(배점:30점) 교육기관 등록기준 이상의 장비보유 여부	
	■ 보유 장비 활용 실적(배점:20점)	
	■ 보유장비의 유지·관리상태의 적정성(배점:20점)	
	보유 장비가 모두 정상작동 되는 경우	☐ 20
	보유 장비 중 정상작동 되는 비율이 80% 이상~100% 미만인 경우	☐ 10
	보유 장비 중 정상작동 되는 비율이 80% 미만인 경우	☐ 0
평가취지		
○ 장비 보유 수준 및 활용실적 확인을 통해 실습 및 체험식 교육을 확대 및 유도하기 위함		
주요평가내용		
○ 교육기관 본사 평가 시 지부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		
○ 교육기관 등록기준이상의 장비보유 여부는 아래의 산식에 따라 점수 산정(점수 상한 30점)		
- 장비보유 비율: $10\text{점} \times \left(\frac{\text{교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수}(\text{set})}{\text{교육기관 등록기준 장비수}(\text{set})} \right)$ ※ 법적 등록기준 장비를 보유하지 못한 경우 : 0점 처리		
○ 보유장비 활용실적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(점수 상한 20점)		
- 보유장비 활용실적 점수 : $20\text{점} \times \left(\frac{\text{보유장비를 활용한 교육과목수}}{\text{총 교육과목수}} + 0.4 \right)$		
현장확인사항		
○ 실제 장비, 장비이력 관리대장, 장비사용대장, 교육결과보고서 등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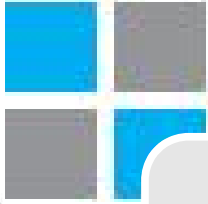
세부평가 A.3.2	휴게 공간 등 교육생 편의시설의 적정성(배점:20점, 가점:5점)	
평가지표	평가기준	평가결과
총 점		
휴게 공간 등 교육생 편의시설의 적정성	■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(배점:10점)	
	휴게공간은 사무실 및 강의실과 별도 공간에 해당 교육기관 전용으로 확보 되어야하고, 냉·난방 시설, 소파(의자), 탁자 및 냉온정수기가 있는 등 이들 모든 기준을 만족할 경우	☐ 10
	휴게공간이 사무실 및 강의실과 별도 공간에 해당 교육기관 전용으로 확보 되어있지 않거나, 냉·난방 시설, 소파(의자), 탁자 및 냉온정수기가 없는 경우	☐ 0
	■ 기본 편의시설 외 추가 편의시설 보유 (배점:10점)	
	휴게공간 내에 <u>추가 편의시설*</u> 항목 중 4가지 이상을 보유했을 경우	☐ 10
	휴게공간 내에 추가 편의시설 항목 중 4가지 미만일 경우	☐ 0
교육생 주차지원 가능여부	■ 교육생 주차 지원 가능여부 (가점:5점)	
	해당 교육장 반경 100m 이내에 10인 이상 무료 주차 가능한 주차 시설을 보유한 경우(해당 시설과 사용계약이 된 경우)	☐ 5
	해당 교육장 반경 100m 이내에 10인 이상 무료 주차 가능한 주차 시설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	☐ 0
평가취지		
○ 교육생 편의성 강화 시설확보를 통해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		
주요평가내용		
○ 교육기관 본사 평가 시 지부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 ○ 기본적인 편의시설 외에 추가적인 편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평가 * (추가 편의시설 항목) : ① 고정식 휴대전화 충전기(2개 이상 인정), ② 커피 또는 음료 자판기(무료제공 다과 인정), ③ 무료 무선인터넷, ④ 인터넷PC, ⑤ TV, ⑥ 상시비치 안전보건 관련 자료(책자, 월간지 등)자료(책자, 월간지 등)		
현장확인사항		
○ 시설물 사용 계약서, 현장확인 등		

A.4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(가감점 항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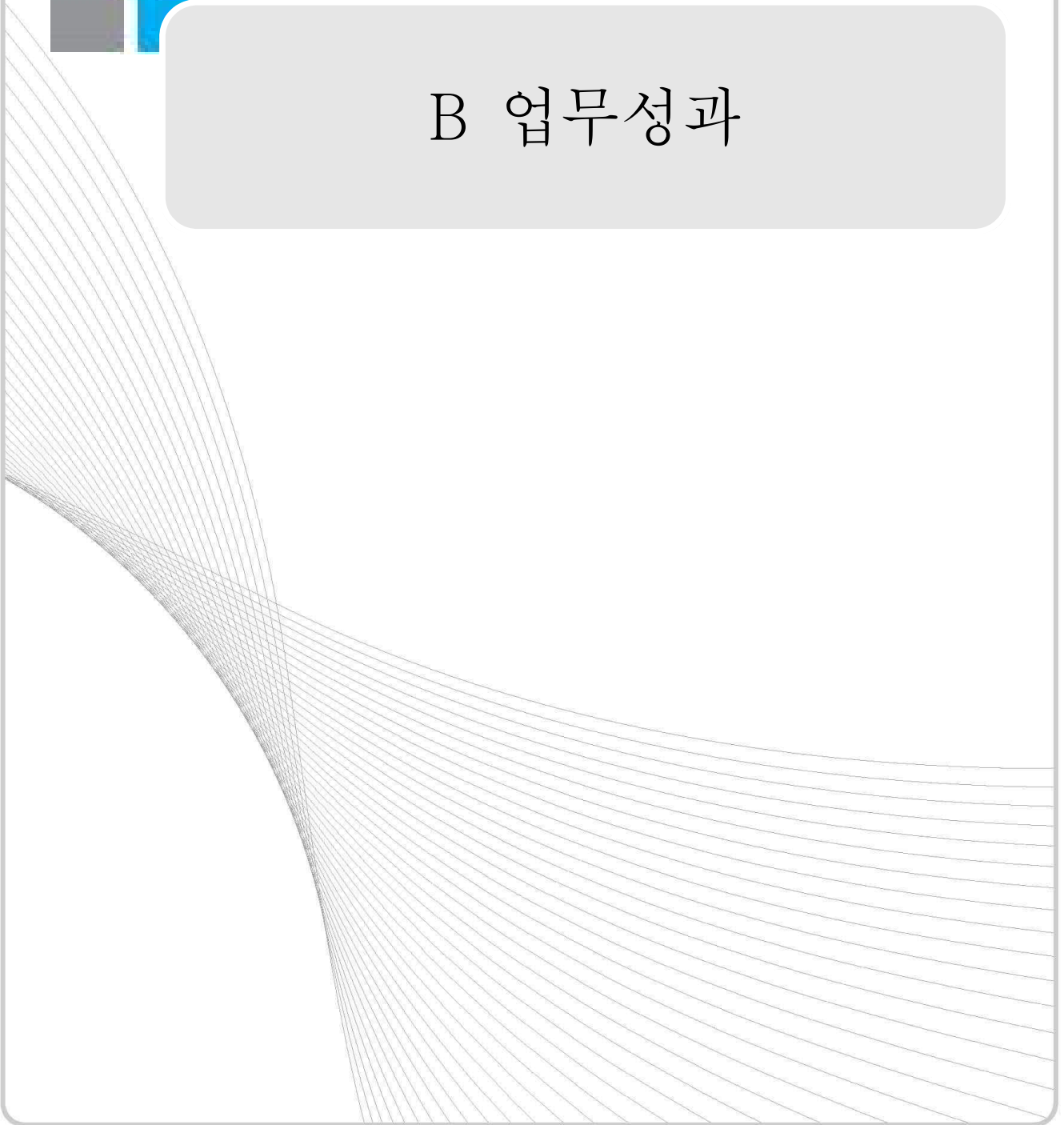
세부평가 A.4.1	포상실적(가점:10점)	
평가지표	평가기준	평가결과
포상실적	평가대상기간내 기관 및 보유 인력에 대한 포상실적 (가점:10점)	
평가취지		
○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평가를 통해 교육품질향상에 동기부여하기 위함		
주요평가내용		
○ 평가대상기간내 기관 및 보유인력에 대한 포상 실적은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분야로 아래의 포상 훈격별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 (최대 10점) - 대통령 포상 : 5점 × 포상수 - 국무총리 포상 : 4점 × 포상수 - 고용노동부장관 포상 : 3점 × 포상수 - 공단 이사장 포상 : 2점 × 포상수 ※ (예시) 교육기관이 대통령 포상을 받았고, 장관포상을 받은 직원 1명, 공단 이사장 포상을 받은 직원이 2명 있을 경우 : 총 12점(5점+3점+2점+2점) 이나 상한 10점 부여		
현장확인사항		
○ 표창장 실물, 포상 일련번호 등		

세부평가 A.4.2		업무정지 처분(감점: -80점 ~ -15점)	
평가지표	평가기준		평가결과
업무정지 처분	평가대상기간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(감점: -80점 ~ -15점)		
평가취지			
○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평가를 통해 교육품질향상에 동기부여하기 위함			
주요평가내용			
○ 교육기관 본사 평가 시 지부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			
○ 평가 기준			
- 고용노동부에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실적을 받아서 평가			
- 처분확정일을 기준으로 최종 처분기간을 월단위로 환산하여 평가			
- 과징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최초 업무정지 예정 기간으로 평가			
○ 평가대상기간내 업무정지 처분에 따른 감점 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			
- 업무정지 처분에 따른 점수 : -15점 × 처분 개월수(최대 감점 -80점)			
※ (예시) 교육기관이 업무정지 처분 6개월을 받은 경우 실제 감점은 -90점(-15점×6개월)이나 최대 감점 점수를 적용하여 -80점 부여			

세부평가 A.4.3	시정 조치 경 고 처 분(감점: -2점~-20점)	
평 가지 표	평 가 기 준	평 가 결 과
시정조치·경고처분	평가대상기간내 시정조치·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(감점: -2점~-20점)	
평가취지		
○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평가를 통해 교육품질향상에 동기부여하기 위함		
주요평가내용		
○ 교육기관 본사 평가 시 지부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		
○ 평가 기준		
- 고용노동부에서 시정조치·경고처분 등의 행정처분 실적을 받아서 평가		
- 처분확정일을 기준으로 시정조치·경고 처분 건수 평가		
○ 평가대상기간내 시정조치·경고처분에 따른 감점 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		
- 시정조치·경고처분에 따른 점수 : -2점 × 처분 건수(최대 감점 -20점)		
※ (예시) 교육기관이 시정조치 6건, 경고처분 5건을 받았을 경우 실제 감점은 -22점 (-2점×11건)이나 최대 감점 점수를 적용하여 -20점 부여		



B 업무성과



B.1 교육관리

세부평가 B.1.1	교육실시 활성화의 적정성(배점:60점)	
평가지표	평가기준	평가결과
총 점		
교육실시 활성화의 적정성	■ 연간 직무교육 실적(횟수)의 적정성(배점:30점)	
	직무교육 연간실시횟수 90%이상	☐ 30
	직무교육 연간실시횟수 80%이상 ~ 90%미만	☐ 20
	직무교육 연간실시횟수 80%미만	☐ 0
	■ 연간 직무교육 실적(인원)의 적정성(배점:30점)	
	직무교육 연간실시인원 90%이상	☐ 30
	직무교육 연간실시인원 80%이상~90%미만	☐ 25
	직무교육 연간실시인원 70%이상~80%미만	☐ 20
	직무교육 연간실시인원 60%이상~70%미만	☐ 15
	직무교육 연간실시인원 50%이상~60%미만	☐ 10
	직무교육 연간실시인원 50%미만	☐ 0
평가취지		
○ 교육실시 실적 평가를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운영을 유도하기 위함		
주요평가내용		
○ 교육기관 본사 평가 시 지부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		
○ 연간 직무교육 실시 횟수 적정성은 아래 산식에 따른 비율로 평가 :		
$= \frac{\text{평가대상기간 교육실시 횟수}}{\text{연간교육실시계획서의 목표 교육횟수} \times (\text{평가대상기간(월)}/12)} \times 100$		
※ (평가대상기간(월)/12) : 총 직무교육 목표횟수를 평가기간으로 환산 적용		
○ 연간 직무교육 실시 인원 적정성은 아래 산식에 따른 비율로 평가		
$= \frac{\text{평가대상기간 총 교육수료 인원수(명)}}{\text{연간교육실시계획서의 목표 교육인원수} \times (\text{평가대상기간(월)}/12)} \times 100$		
※ (평가대상기간(월)/12) : 총 직무교육 목표인원을 평가기간으로 환산 적용		
현장확인사항		
○ 교육계획서, 교육결과보고서 등		

세부평가 B.1.2	VR 체험교육 활성화 노력(배점: 50점, 가점:40점)	
평가지표	평가기준	평가결과
총 점		
VR 체험교육 활성화 노력	■ VR 콘텐츠 활용 여부(배점: 50점) VR 장비를 활용한 체험교육계획이 문서화되어 있고, 체험교육계획에 따라 모두 실행된 경우 ☐ 50 VR 장비를 활용한 체험교육계획이 문서화되어 있으나, 체험교육이 일부 실행되지 않은 경우 ☐ 30 VR 장비를 활용하여 체험교육계획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고 체험교육도 실행되지 않은 경우 ☐ 0	
	■ VR 체험교육 장비 보유 여부(가점: 20점) 체험교육에 필요한 VR장비를(최소 40개) 보유한 경우 (가점20점)	
	■ 자체 VR 콘텐츠 제작·보유 여부(가점: 20점) 체험교육용 VR 콘텐츠 제작계획이 문서화 되어있고, 1건 (콘텐츠) 이상 자체 제작·보유한 경우 (가점20점)	
	체험교육용 VR 콘텐츠 제작계획이 문서화 되어있으나, 자체 제작하지 않은 경우 (가점:10점)	
평가취지		
○ VR체험교육 실적 등 평가를 통해 내실 있는 교육 운영을 유도하기 위함		
주요평가내용		
○ 교육기관 본사 평가 시 지부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		
○ VR 체험교육 장비 보유 여부		
- HMD(Head mounted Display) 장비를 보유할 경우 인정 ※ HMD 장비 : 종이재질의 일회성 장비가 아닌 것 (예:카드보드)		
○ 자체 VR 콘텐츠 제작·보유 여부		
- 체험교육을 위한 자체 VR 콘텐츠 제작계획이 문서화 되어있어야 함 - VR 콘텐츠는 직무교육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작하여야 함		
○ VR 콘텐츠 활용 여부		
- 체험교육계획 : VR 장비 및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교육계획이 적정하게 문서화 되어 있는 경우 인정 - 체험교육 실행 여부 : 체험교육계획에 따라 자체 제작 또는 공단에서 보급한 VR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기관별 평가 실시일 이전까지 실시한 실적을 인정 ※ '18년 상반기 공단에서 안전보건관련 VR 콘텐츠(정보전달형) 50~60종을 교육기관에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임 ※ 교육결과보고서에 체험교육 사진 첨부		
현장확인사항		
○ 체험교육계획서, VR 콘텐츠 제작계획서, 교육결과보고서 등		

세부평가 B.1.3		교육일정 변경절차 준수 및 변경일정 공지의 적정성(배점30점)	
평가지표	평가기준		평가결과
총 점			
교육일정 변경절차 준수 및 변경일정 공지의 적정성	■ 승인된 교육일정의 변경절차 준수 여부(배점:20점) 교육일정 임의변경 횟수가 0건인 경우 □ 20 교육일정 임의변경 횟수가 1건인 경우 □ 10 교육일정 임의변경 횟수가 2건인 경우 □ 5 교육일정 임의변경 횟수가 3건 이상인 경우 □ 0		
	■ 변경된 교육일정 공지 여부(배점:10점) 교육 시작일 전 5일 이상 공지한 비율**이 80%이상인 경우 □ 10 교육 시작일 전 5일 이상 공지한 비율이 60% 이상 ~ 80% 미만인 경우 □ 5 교육 시작일 전 5일 이상 공지한 비율이 60% 미만인 경우 □ 0		
평가취지	○ 교육일정 변경절차 준수 및 변경된 일정 공지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함		
주요평가내용	○ 교육기관 본사 평가 시 지부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 ○ 교육일정 준수 여부 - 임의변경 : 아래의 교육일정 변경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교육일정 변경 승인 요청 교육기관→공단 교육일정 변경의 적정성 검토 공단 교육일정 변경 승인 공단→교육기관 변경된 교육일정 공지 교육기관→교육신청자		
	○ 변경된 교육일정 공지의 적정성 * 5일 : 교육 시작당일, 토, 일요일 및 공휴일 미포함 (대체 휴일은 포함) * 공지 비율 : $\frac{5일\ 이상\ 공지한\ 교육수}{총\ 일정\ 변경\ 교육수} \times 100$		
현장확인사항	○ 공단 전산자료 확인		

세부평가 B.1.4		커뮤니티 또는 홈페이지 운영의 적정성(배점:40점, 감점:-10점)	
평가지표	평가기준		평가결과
총 점			
커뮤니티 또는 홈페이지 운영의 적정성	■ 커뮤니티 또는 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 접근 가능한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(배점:10점)		
	최근 6개월 이내 매 2개월마다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으며, 홈페이지 또는 카페, 블로그 등 교육기관명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채널(이하 온라인 채널)이 있는 경우(모두 해당할 경우)	□ 10	
	최근 6개월 이내 매 2개월마다 업데이트된 내용이 없거나, 홈페이지 또는 카페, 블로그 등 교육기관명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채널(이하 온라인 채널)이 없는 경우	□ 0	
	■ 안전보건관련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(배점:15점)		
	온라인 채널을 통해 안전보건관련 자료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,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등록된 자료가 있는 경우(모두 해당할 경우)	□ 15	
	온라인 채널을 통해 안전보건관련 자료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,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등록된 자료가 없는 경우	□ 0	
	■ 온라인상에서 질의·응답이 가능한 경우 (배점:15점)		
	온라인 채널을 통해 교육생의 질의를 받고 응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, 평가기간 중 교육생 질의에 대해 90%이상 답변을 하고 있는 경우 (모두 해당할 경우)	□ 15	
	온라인 채널을 통해 교육생의 질의를 받고 응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, 평가기간 중 교육생 질의에 대해 90%이상 답변을 하고 있는 경우 (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)	□ 0	
	■ 커뮤니티·홈페이지 운영의 부적정 (감점:-10점)		
커뮤니티 또는 홈페이지 내용 확인시 부적정 내용이 있는 경우	-10		
평가취지			
○ 커뮤니티 또는 홈페이지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교육기관과 교육생간 환류(Feed Back)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의 개선방안 도출에 기여하기 위함			
주요평가내용			
○ 교육기관 본사 평가 시 지부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			
○ 안전보건관련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			
- 공단 홈페이지 자료실과 링크를 제공할 경우 15점 인정			
현장확인사항			
○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 또는 홈페이지를 직접 확인			

세부평가 B.1.5		교재 및 교육내용의 적정성(배점:60점)	
평가지표		평가기준	
		평가결과	
		총 점	
교재 및 교육내용의 적정성	▣ 교육 목표에 적합한 주교재 사용 여부(배점:20점)		
	위탁교육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		☐ 20
	공단 발간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		☐ 10
	승인되지 않은 교재를 활용하거나, 별도의 교재가 없을 경우(단순 출력물을 활용할 경우도 해당)		☐ 0
	▣ 최신 산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교재사용 여부(배점:20점)		
	주교재 내용이 최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을 경우		☐ 20
	주교재 내용이 최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		☐ 0
	▣ 전문화교육과정 개설 여부(배점:20점)		
	위탁교육 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교육과정 외에 자체적으로 전문화교육과정을 개설한 경우		☐ 20
	위탁교육 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교육과정 외에 자체적으로 전문화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		☐ 0
평가취지			
○ 교재 및 교육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교육목적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유도하여 안전보건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하기 위함			
주요평가내용			
○ 교육기관 본사 평가 시 지부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			
○ 교육 목표에 적합한 주교재 사용여부			
- 위탁교육 관리위원회 :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 관리위원회 (內 교재심의소위원회), 교육규정(고시)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과정의 교재의 경우 인정			
○ 전문화교육과정 : 전문적이고 다양한 안전보건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위탁교육 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교육과정 외에 교육기관 자체적으로 업종 또는 전문분야별 특성에 맞는 전문화교육과정 운영			
현장확인사항			
○ 자체 교재심의 결과, 연간교육계획, 교육결과서, 주교재 및 부교재 실물 책자 등			

세부평가 B.1.6	위탁교육과정 개수 및 충족 비율(배점:60점)	
평가지표	평가기준	평가결과
총 점		
위탁교육과정 개수 및 충족 비율 (폐강율 포함)	■ 과정운영 횟수 충족비율(배점:30점)	
	충족비율이 80% 이상~130% 미만	☐ 30
	충족비율이 50% 이상~80% 미만 또는 130% 이상~160% 미만	☐ 15
	충족비율이 50% 미만 또는 160% 이상	☐ 5
	증빙자료가 불충분하여 충족비율 산출이 불가	☐ 0
	■ 승인받은 직무교육과정의 폐강율(배점:30점)	
	폐강율이 10% 미만	☐ 30
	폐강율이 10% 이상 ~ 20% 미만	☐ 15
	폐강율이 20% 이상 ~ 30% 미만	☐ 5
	폐강율이 30% 이상	☐ 0
평가취지		
○ 직무교육계획 수립 및 계획의 이행 노력 정도를 평가하여 합리적 교육수요 예측 및 체계적 교육계획 수립을 유도하기 위함		
주요평가내용		
○ 교육기관 본사 평가 시 지부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		
○ 직무교육 과정운영 횟수 충족 비율		
충족 비율(%) : $\frac{\text{직무교육과정 운영 횟수(실적기준)}}{\text{승인받은 직무교육과정 운영 횟수(계획기준)}} \times 100$		
○ 승인받은 직무교육과정의 폐강율		
폐강율(%) : $\frac{\text{직무교육과정 폐강 횟수}}{\text{승인받은 직무교육과정 운영 횟수(추가승인 과정 포함)}} \times 100$		
현장확인사항		
○ 직무교육계획 및 폐강 등 승인 서류		

B.2 교육생 관리

세부평가 B.2.1	교육생 출결관리의 적정성 (배점:60점)	
평가지표	평가기준	평가결과
총 점		
교육생 출결관리의 적정성	■ 교육생의 출결관리 방법의 지정 여부(배점:20점)	
	과정별로 출결관리 방법이 지정되어 있고 문서화된 경우(배점:10점)	
	본인 확인 절차가 지정되어 있고 문서화된 경우(배점:10점)	
	■ 교육생의 출결관리의 실행 여부(배점:40점)	
	과정별 지정된 출결관리 방법에 따라 출결관리를 실시한 경우(배점:10점)	☐ 10
	출결관리의 명확성은 아래의 등급 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(배점:30점) ① 동영상촬영, 지정좌석 운영 및 확인, 매시간 출석확인 등 교육생의 상시 출석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: (30점) ② 교육과정 중 2회 이상 출결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(10점) ③ 교육과정 중 1회만 출결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(5점) ④ 그 외 : (0점)	☐ 30 ☐ 10 ☐ 5 ☐ 0
평가취지	○ 교육생 출결관리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이수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생이 이수처리 되지 않도록 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	
주요평가내용	○ 교육기관 본사 평가 시 지부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 ○ 교육생 출결관리 방법 및 교육생 출결관리의 적정성은 세부평가기준 점수(세부 평가기준별 조건에 부합할 경우 각각의 점수를 부여, 아닐 경우 0점)를 합산하여 산정	
현장확인사항	○ 교육계획서, 출석부(해당 과정 수강인원의 출결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 및 교육 결과 보고서, 온라인 수강관리 시스템 등	

세부평가 B.2.2	학급당 정원 및 교육생 업종 동질성 여부(배점60점)	
평가지표	평가기준	평가결과
총 점		
학급당 정원 및 교육생 업종 동질성 여부	■ 교육과정별 학급정원의 적정성 여부(배점:30점)	
	교육수료 인원이 60명을 초과하는 교육과정 비율*이 5% 미만	☐ 30
	교육수료 인원이 60명을 초과하는 교육과정 비율이 5% 이상 ~ 10% 미만	☐ 20
	교육수료 인원이 60명을 초과하는 교육과정 비율이 10% 이상 ~ 15% 미만	☐ 10
	교육수료 인원이 60명을 초과하는 교육과정 비율이 15% 이상 ~ 20% 미만	☐ 5
	교육수료 인원이 60명을 초과하는 교육과정 비율이 20% 이상	☐ 0
	■ 교육과정별 교육생 소속 사업장 업종 동질성(배점:30점)	
	이종업종 교육생 대상 교육과정 운영 비율*이 10% 미만	☐ 30
	이종업종 교육생 대상 교육과정 운영 비율이 10% 이상 ~ 20% 미만	☐ 20
	이종업종 교육생 대상 교육과정 운영 비율이 20% 이상 ~ 30% 미만	☐ 10
이종업종 교육생 대상 교육과정 운영 비율이 30% 이상인 경우	☐ 0	
평가취지		
○ 학급당 정원 적정성 및 교육과정별 교육생 소속 사업장 업종 동질성여부 평가를 통해 학습효과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		
주요평가내용		
○ 교육기관 본사 평가 시 지부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		
○ 교육과정별 학급정원의 적정성 여부		
- 초과 교육과정 비율(%) : $\frac{\text{평가대상기간 총교육과정 수} - 60\text{명 이하 교육과정 수}}{\text{평가대상기간 총교육과정 수}} \times 100$		
○ 교육과정별 교육생 소속 사업장 업종 동질성		
- 이종업종 교육생 대상 교육과정은 제조업, 건설업 및 그 외의 업종(서비스, 기타 업종 등) 교육생을 혼합하여 교육하는 과정, 1개 교육과정 전체 교육생 중 이종업종 비율이 5%를 초과할 경우 해당(예. 총원 40명 교육과정 중 제조업 38명, 건설업 1명, 서비스업 1명일 경우 이종업종 비율 5%이하로 단일업종 교육으로 인정)		
- 교육생 비율(%) : $\frac{\text{평가대상기간 총교육수료자수} - \text{단일업종교육 수료자수}}{\text{평가대상기간 총교육수료자수}} \times 100$		
※ 산업법상 정해진 교육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교육생이 교육받기를 원하는 경우 정해진 학급정원(60명)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. 단, 학급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경우 해당사유를 교육계획 등 문서에 명시 할 것		
현장확인사항		
○ 교육계획, 교육결과서 등		

세부평가 B.2.3	교육수료자 결과등록의 적정성(배점:20점)	점 수
총 계		
교육수료자 결과등록의 적정성	■ 교육수료자 중 지연등록자 비율(배 점:20점)	
	교육실시후 결과등록이 7일*을 초과하는 비율**이 5% 미만인 경우	☐ 20
	교육실시후 결과등록이 7일을 초과하는 비율이 5% 이상 10% 미만인 경우	☐ 10
	교육실시후 결과등록이 7일을 초과하는 비율이 10% 이상인 경우	☐ 0
평가취지	○ 교육수료자 중 지연등록자 비율 평가를 통해 교육수료자 현황 등 교육자원관리의 적합성 기여 및 수료자의 교육이수증 출력 등 편의성 제고를 위함	
주요평가내용	○ 교육기관 본사 평가 시 지부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 ○ 교육수료자 중 지연등록자 비율은 직무교육센터(www.dutycenter.net) DB의 교육결과 입력 일자를 기준으로 확인하여 평가 ○ 교육수료자 결과등록의 적정성은 아래의 등급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 - 교육실시후 결과등록 7일 : 교육실시일을 포함하며, 토요일, 공휴일 산입하지 않음 * 7일 초과비율(%) : $\frac{\text{교육수료 후 7일을 초과하여 등록한 수료자수}}{\text{평가대상기간 총 교육수료자수}} \times 100$	
현장확인사항	○ 직무교육센터 자료	

B.3 고객 만족도

세부평가 B.3.1	교육이수자 만족도(배점:100점)	
평가지표	평가기준	평가결과
교육이수자 만족도	▣ 교육생 만족도 측정결과	
평가취지	○ 교육이수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은 향후 교육기관 운영에 반영토록 유도하여 교육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	
현장확인사항	○ 교육기관 본사 평가 시 지부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 ○ 교육 만족도 측정결과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○ 외부용역기관에서 교육기관별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	
현장확인사항	○ 외부 리서치 전문 업체의 설문조사 결과	

B.4 자체평가 및 개선노력

세부평가 B.4.1	교육프로그램 자체평가의 적정성(배점:30점)	
평가지표	평가기준	평가결과
총 점		
교육프로그램 자체평가의 적정성	■ 교육생 의견수렴 실행 여부 (배점:30점)	
	연간 교육이수자 중 50% 이상에 대해 설문응답을 받았고 해당 설문결과 실물을 90%이상 보존하는 경우	☐ 20
	자체 평가를 위한 교육생 의견수렴 절차가 문서화 되어 있는 경우	☐ 10
평가취지		
○ 교육이수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은 향후 교육기관 운영에 반영토록 유도하여 교육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		
주요평가내용		
○ 교육기관 본사 평가 시 지부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		
○ 교육생을 통한 의견수렴 방법의 적정성은 세부평가기준 점수(세부 평가 기준별 조건에 부합할 경우 각각의 점수를 부여, 아닐 경우 0점)를 합산하여 산정		
현장확인사항		
○ 교육계획서, 설문조사결과, 설문지 원본 등		

세부평가 B4.2	자체평가에 의한 개선 실적의 적정성(배점:30점)	
평가지표	평가기준	평가결과
총 점		
자체평가에 의한 개선 실적의 적정성	▣ 자체 평가에 의한 개선실적(배점:30점)	
	개선 계획에 따라 모두 개선한 경우(배점:15점)	
	미흡한 사항 중 60% 이상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한 경우(배점:10점)	
	설문조사 결과를 집계하고 미흡한 사항을 도출한 경우(배점:5점)	
평가취지		
○ 자체평가에 의한 개선실적 평가를 통해 교육품질의 지속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		
주요평가내용		
○ 교육기관 본사 평가 시 지부 및 출장소 실적 통합 평가		
○ 자체 평가를 통한 개선실적의 적정성은 세부평가기준 점수(세부 평가 기준별 조건에 부합할 경우 각각의 점수를 부여, 아닐 경우 0점)를 합산하여 산정		
현장확인사항		
○ 자체 설문조사 보고서, 자체 개선계획 및 현장실사 결과 등		